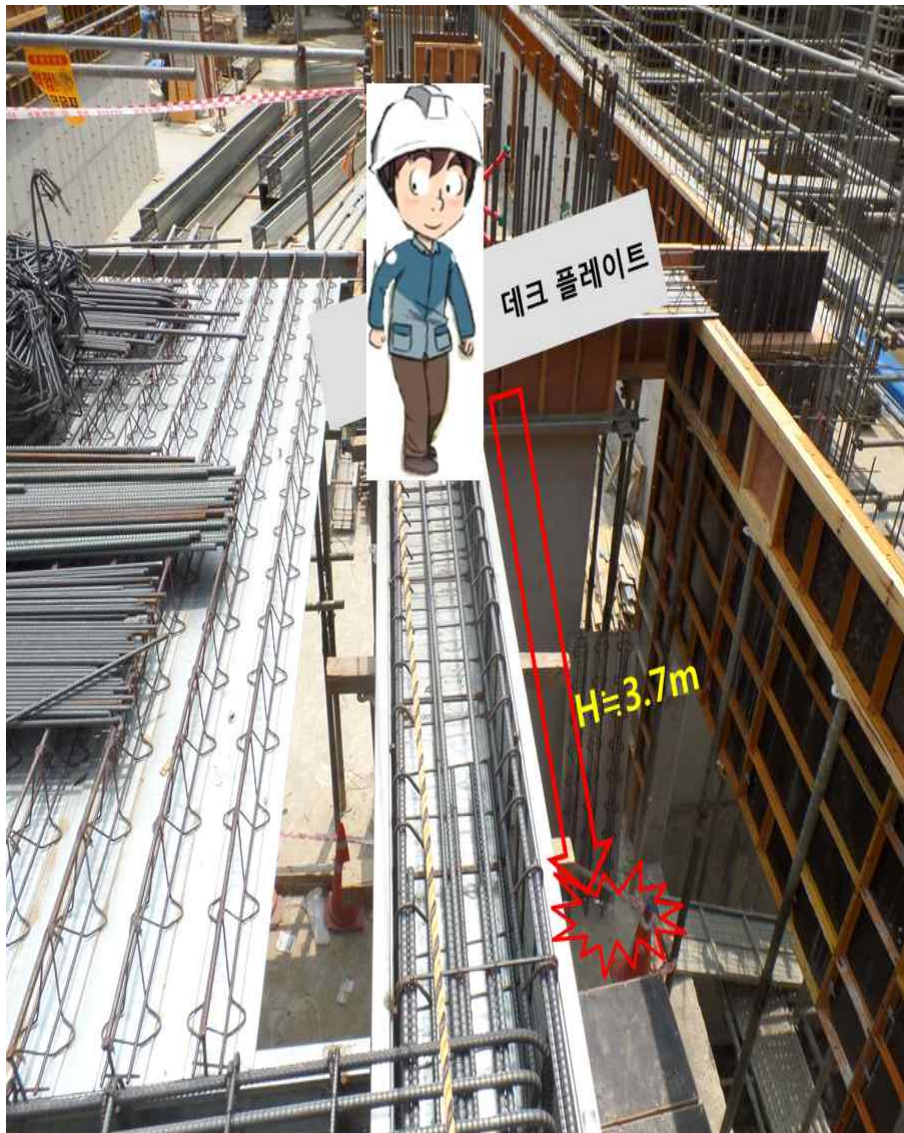


데크 플레이트 설치작업 중 떨어짐

공 사 명	○동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8.08.06.(월) 16:00경
재해형태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인천시 ○구	공사규모	지하5층 지상24층 1개동
재해개요	2018년 08월 06일(월) 16:00경 인천 ○구에 소재한 (주)○○건설에서 시공중인 「○동 ○○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주)○○산업개발 소속 근로자인 이○○(만59세, 남, 데크공)이 지하4층 바닥 데크 플레 이트 설치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데크 플레이트 설치 예정인 개 구부(1.8m×7.2m)를 통해 지하5층 바닥(H≒3.7m)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철저 - 사업주는 데크 플레이트 설치작업 시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 철저 - 사업주는 데크 플레이트 설치 작업 등 높이 약 3.7m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또한 안전모는 외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턱끈을 조이고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통로의 설치 철저 - 사업주는 데크 플레이트 설치 및 철근 배근작업 시 근로자의 발걸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족방지용 작업발판 등을 작업장의 통로에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



재해조사 당시 현장모습



지하5층에서 바라본 피재자가 떨어진 위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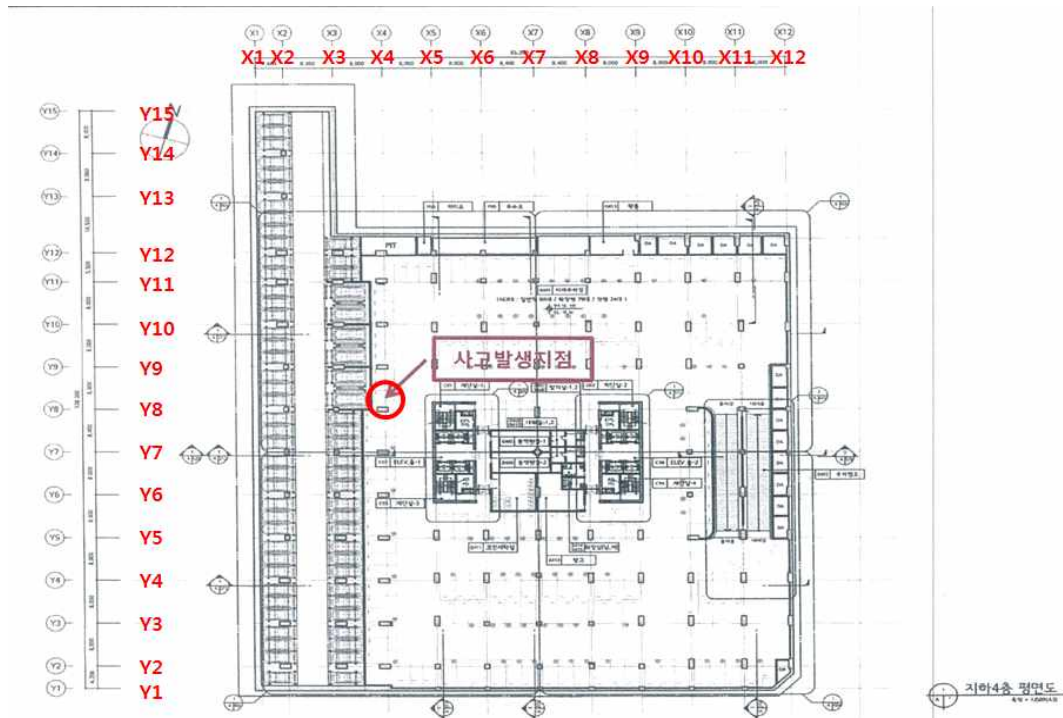
피재자와 함께 떨어진 데크 플레이트 모습



재해발생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안전모 모습



피재자 추락높이 측정 모습



재해발생 위치(평면도)